

case
1

이동식 에어컨

요약

사례명	이동식 에어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2263 (2021.11.12.)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 콘덴서, 증발기 등의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태국에서 태국산 부품들과 함께 냉각 유닛을 완성하고 다른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이동식 에어컨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미완성 상태로 수입된 중국산 콘덴서와 증발기는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되는 공정을 통해 완전한 냉각 유닛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며, 태국에서 생산된 냉각 유닛이 이동식 에어컨의 본질을 부여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¹⁾

사 례 명 [이동식 에어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2263 (2021.11.12.)

사실관계

요청자	Hisense USA Corporation (대리인: Wiczer Sheldon & Jacobs, LLC)	
제품	제품명	• 이동식 에어컨 장치 AP 시리즈 (모델명: AP0522R1W, PAC06, MAP06, AP0722CW1W, AP1022CW1G)
	구성	• 팬 서브 어셈블리, 새시 및 금속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콘덴서, 증발기, 필터, 바퀴 등
	용도	• 중앙 냉방이 없는 가정, 아파트 및 기타 건물에서의 냉방에 사용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산 콘덴서, 증발기, 모터 등 일부 부품들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 제조공정
 - (1)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
 -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루버, 공기 배출구, 필터 프레임 등을 제조
 - 팬 허브와 블레이드 용접 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팬 서브 어셈블리 완성
 - (2) 팬 서브 어셈블리를 중국산 모터에 연결
 - (3) 새시 및 기타 금속 부품, 기타 플라스틱 부품 제작
 - (4)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하여 입·출구 튜브 제작 후 중국산 콘덴서 및 증발기에 용접
 - (5) 각 장치 최종 조립
 - 콘덴서, 증발기, 바퀴, 모터 커버, 수위 스위치 등을 새시에 결합 후 나사로 고정
 - 중국산 토출·흡입 튜브 용접 후 질소 주입
 - 상·하부 팬, 보호망, 공기 배출구 설치 및 배선 연결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전기 박스, PCBA, 디스플레이, 필터, 리시버 설치 후 진공 및 냉매 충전
 - 디스플레이 패널을 PCBA 및 전면 패널에 배선 연결
 - 태국에서 제조된 패널, 상·하부 필터, 필터 커버 설치 및 나사로 고정
3. 시험 및 검사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사례 콘덴서와 증발기를 중국에서 제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하여 입·출구 배관과 연결함. 입·출구 배관은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한 후 브레이징으로 증발기와 콘덴서의 끝단에 접합하여 형성됨. 증발기는 새시에 맞도록 장착하기 위해 벤딩 기계에 투입됨

판정 중국산 컴프레서와 미완성 콘덴서 및 증발기로 구성된 냉방 유닛은 태국에 수입될 당시 미완성 상태이므로 에어컨의 본질로 간주 될 수 없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 중국산 부품과 태국산 부품을 이동식 에어컨으로 최종 조립하는 공정은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 다만, 에어컨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냉각 유닛으로 부품의 상당수가 태국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하는 공정으로 미완성 상태의 중국산 콘덴서와 증발기가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현행 제301조 적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의 원산지는 태국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에어컨의 핵심 구성요소는 냉방 유닛이며 콘덴서 및 증발기는 냉방 유닛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해당 부품들이 미완성 상태로 수입되어 다른 부품들과 함께 냉방 유닛으로 완성되는 경우, 최종 냉방 유닛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2263 (2021.11.12.), <https://rulings.cbp.gov/ruling/N322263>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https://rulings.cbp.gov/ruling/N31684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